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김 경 근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

들어가며

지난해 대학 입시에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악용한 입시 비리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일파만파의 충격을 받았다.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입시 특별전형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부정이 저질러졌으며 검찰이 파악한 바로는 입시 부정에 연루된 대학이 10곳이 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입학한 학생도 30명 이상이라고 한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은 서울 소재 명문 대학들이며, 비리를 청탁한 학부모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잘못된 자녀사랑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그 자녀들을 부정입학 시킨 사실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이는 범법 행위로서 엄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부정 입학으로 물의를 빚었던 외국인 및 재외국민 무시험 특례입학 뿐만 아니라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 등 외국근무 재외국민 자녀 정원외 특례입학 제도도 대학 입시에서 일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서울대의 경우 금년도부터 지원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각 대학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악용한 부정 입학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사회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제도가 사실상 일부 소수자에 대한 특혜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번 부정 입학을 계기로 이 제도가 과연 계속해서 시행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회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제도가 계속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제도는 지난 '77학년도부터 외교관 및 재외 국민 자녀에 대하여 특례 입학을 허용한 것에서 시작되어 그 동안 몇 차례의 보완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제도가 외교관 및 재외국민 자녀와 같은 해외 거주 학생들이 국내 교육

기회 상실로 국내에서 계속 공부한 학생과의 입시 경쟁에서 불리한 점을 감안, 특례입학을 허용함으로써 국내에서 계속 교육을 받아 온 학생들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대학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이러한 특례입학을 통해서 그들이 외국에서 쌓은 경험과 소양을 국내 대학 및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돋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온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제도의 이러한 궁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근래 드러난 일부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이 제도의 존속 자체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만약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은 부정적 사례들이 이 제도의 실시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면, 이 제도의 존속문제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러한 부정적 사례들이 제도 실행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제도 운영상의 부주의나 관계 규정상의 불완전함과 같은 개선의 여지가 분명한 문제들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존속시키되 언론 보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부정 입학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의 연혁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교관 및 재외국민 자녀와 같은 해외 거주 학생들이 국내 교육 기회 상실로 국내에서 계속 공부한 학생과의 입시 경쟁에서 불리한 점을 감안, 특례입학을 허용함으로써 국내에서 계속 교육을 받아 온 학생들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대학 입학의 기회

를 제공하여 그들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77년 2월 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77학년도부터 시작되었다. '78년 9월 동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제도에 따른 특례 입학의 대상은 '79학년도부터는 해외 주재 상사 직원 및 정부 파견 의사 자녀까지 확대되었으며 다시 '91년 9월 동법 시행령의 개정 및 대학 학생정원령에 따라 '92학년도부터는 특례 입학의 정원 제한, 해외 수학 기간 강화 등 특례 입학 요건이 강화되었다. 한편 '97학년도부터는 공무원 자녀, 재외 국민, 상사 직원 자녀 등에만 국한 적용되었던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가 모든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와 부정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는 그 동안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국내 대학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수학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내 교과과정을 꾸준히 이수해야만 치를 수 있는 대학 입시로 인해 국내 대학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외교관 및 재외국민 자녀 등 해외 수학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왔다. 그런데 근래의 언론 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이 그 취지를 무시하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 자식만 원하는 대학에 가면 된다는 비양심적인 이기주의로 불법 브로커들을 통하여 이 제도를 악용하여 자기 자식들의 부정 입학을 시도한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이유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 재외국민에 통상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외국인에게도 특례입학이 허용된 경우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나 논의의 편의상 계속해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라고 하겠다.

병역 비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병역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 제도가 비록 언론 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학생들의 부정 입학 수단으로 악용되었더라도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학생들의 국내 적응을 돋기 위해 마련된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먼저 그 악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계속해서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현재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재외국민 전형 유형은 모두 여섯 가지이며,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에서 12년간 거주·수학한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다. 해외 근무 공무원 자녀 등을 위한 나머지 유형들은 부모 동반 2년 이상, 외국 거주 2년 이상, 외국 학교 수학 사실만 증명되면 지원할 수 있지만 이 전형들의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하며 일부 대학에서는 국어, 수학 등 시험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모집인원도 정원의 2%로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에서 12년간 거주·수학한 학생들을 위한 전형은 서류만 통과하면 경쟁이 없으며 인원도 정원에 판계없이 뽑는다고 한다. 이렇게 서류 전형 외에 별다른 경쟁도 없고 모집 정원에도 제한이 없다는 점을 입시 브로커와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이 악용하여 부정 입학을 시도한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거의 대부분의 부정 입학 사례들이 외국에서 12년간 거주·수학하거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전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의 단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19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지난 해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한 김 모(19)양은 입학 당시 대학 측에 초등학교부터 고교 졸업까지 12년간 외국에 있었다는 출입국증명 사실원과 외국 초중고교 성적표, 졸업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김 모양

은 초중고교 때 잠깐 외국에 나갔을 뿐이고 졸업 서류 등 모두가 가짜였다고 한다.

금번 언론 보도에 따른 부정 입학 사례들을 볼 때,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가 부정 입학의 수단으로 악용된 직접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는 전형에 요구되는 서류 위조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이 허술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국 국적을 돈주고 사면 자녀를 편법 입학시킬 수 있게 돼 있는 등 특례입학 기준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원인들은 언론 보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 당국이나 교육 당국 등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기관들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제거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언론에서 보도된 부정 입학 사례들은 이 제도의 실행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결코 아닌 것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의 필요성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정 입학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도 자체를 폐지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이다.

직업외교관을 포함한 재외 국민들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전형 제도는 존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가령 직업외교관의 경우 해외 근무 횟수가 많은 데다 그 근무 기간마저 상당히 긴 탓에 그 자녀들은 국내 교육을 꾸준히 받을 수 조차 없다. 직업외교관의 경우에는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오지 국가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이 경우 그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직업외교관을 부모로 두었다는 이유로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며 모국어도 서툴게 되고 친구조차 많지

않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직업외교관 자녀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내 교육을 꾸준히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가진 학생들의 고충을 전혀 배려함이 없이 그들에게 특별전형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국내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대입 시험을 치루게 한다면 이는 결코 공정한 경쟁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부에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통하여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는 대학 수학 능력이 현저히 뒤떨어진다면서 이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있어서 학생 선발 방법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면 해결될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일례로 필자는 특별전형 제도로 국내 대학에 입학한 선배 외교관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학업 성적도 우수할 뿐 아니라 졸업 후 각 분야에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바가 있다.

결국 재외국민 전형 제도는 국내에서 꾸준히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견주어 지적 능력이나 학습 의지가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국내 교육을 꾸준히 받지 못한 까닭으로 입게 되는 입시 경쟁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방편으로서 대학 입학에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나가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부연하자면 필자와 같은 직업외교관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본국과 세계 각지를 전전하며 국내 교육과정과 외국 교육과정을 번갈아 수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아프리카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업 외교관들의 자녀들 중에는 현지의 교육 시설 미비로 인하여 부모와 떨어져 제3국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은 실정에서 이들에게 국내 입시 제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특례

입학은 그들이 외국에서 쌓은 경험과 소양을 국내 대학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긍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근래 획일적인 대학 입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많은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실업계 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선·효행자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자 특별 전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별전형 제도가 마련된 것은 그 동안 하루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기존의 획일적인 대학 입학 시험의 폐단이 심각했기 때문인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특별전형제도가 그 제도적 취지에 맞게 실시만 된다면 그 동안 획일적인 대입시의 폐단과 이에 따른 과열된 비정상적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대가 시험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재능 있고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뽑자는 취지에서 지난 '98학년도 입시부터 학교장 추천 입학제를 실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사실 요즘 실시되고 있는 각종의 특별전형 제도의 선구적인 존재로 이해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직업외교관을 포함한 재외국민들의 자녀들이 해외 교육 기간 중 익힌 국제 감각과 외국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인생 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필자는 확신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될 수 있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상의 문제점만 부각시키며 이 제도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 조류에도 역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의 운영방안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기 위해서 또한 작년 대학 입시에서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12년간 거주·수학한 학생들을 위한 전형의 경우 지금처럼 서류 전형만으로 합격자를 뽑지 말고 해당 국가의 언어로 논술 및 면접을 실시하여 외국어 실력을 검증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국어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당국은 좀 더 신중히 서류를 심사하기만 했더라도 많은 경우 부정 입학을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을 교훈 삼아 서류 심사를 보다 엄격하고 치밀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재외국민 특별전형 학생들에게도 자신들이 입학하고자 하는 국내 대학에서 수학 능력을 검증하는 본고시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후적으로 특별전형 제도를 통하여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잘 적응하는 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외교관은 근무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기적으로 해외를 돌아다녀야만 하는 까닭에 그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보다 오랜 기간 해외에서 불리한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국내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기간에 따라 가산점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바 이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치며

최근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둘러싼 부정

입학 사태를 통해 이 제도가 과연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으나 이는 제도를 존속시키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교육을 꾸준히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없어서 비록 국내 대입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는 못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국내 대학에서 충분히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의욕을 가진 학생들에게 입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 대학 입학에 있어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부여해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사실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될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서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해외 경험을 통해 국제감각이 풍부하고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서 이들이 국내에 흡수되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주요 국가에 한국인 학교가 세워져 직업 외교관을 포함한 해외 주재 공무원 등 해외 파견 인력들이 자녀 교육 걱정이 없이 업무에 전념하고 그 자녀들이 외국에서 국내 수준 못지 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계속해서 이 제도가 부작용 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대학을 포함한 관계 당국들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관련 규정들도 이를 위해 계속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

김경근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을 수료하였다. 외교통상부 홍보과장, 제 2기 학술의관 등을 역임하는 한편 미국, 사우디, 싱가폴, 벨기에, 이스라엘, 태국 등에서 근무하고 현재 재외국민영사국장으로 재직 중이다.